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유산 큐레이팅 교육연구팀
자체 관리 운영 규정

제정 2021.02.16.
일부개정 2023.03.02.
일부개정 2023.10.02.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영남대학교 외부연구관리지침’과 ‘영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자체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연구팀의 조직,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원생의 학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내 미래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소형의 교육연구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된 영남대학교(이하 “본교”)소속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유산 큐레이팅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 2장 운영기구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교육연구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제는 재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교육연구팀장 선발
2. 교육연구팀의 예산 및 결산
3. 교육연구팀의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팀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팀장은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연구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원 및 사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를 포함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 및 사업의 발전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참여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며,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현장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 3장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제7조(참여대학원생 정의)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문화인류학과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학과 내 BK21 연구실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국민연금·산재보험(이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8조(참여대학원생 권리와 의무) ① 참여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4단계 BK21사업 관련 연구지원금(장학금, 등재(후보)지 게재료, 학회참가비, 발표비, 한국연구재단 인정 학술대회 발표비, 국제화 경비, 성과급, 기타연구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연구증진을 위해 20시간의 집중연구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이 수행하는 각종 학술연구활동(현지조사, 학술대회 참가, 헤리티지 포럼 및 콜로키움, 랩 세미나, 출판물 간행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④ 참여대학원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연구팀 윤리위원회 윤리 규정 및 본교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원대학원생 정의)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실적, 교육연구팀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기여도 등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제10조(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학 이후 첫 학기에 한하여 평가 없이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장학금 지원 기준) ① 지원대학원생은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로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② 졸업이 예정된 경우 졸업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연구에 전념했다는 교육연구팀장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구비·제출할 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장학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과정 수료생 또는 학.석사통합과정생: 월 10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6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월 130만 원 이상

제12조(성과급 지급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별표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간 내 교육연구팀의 사업수행에 이바지한 성과로 평가받는 경우 평가 시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 4장 참여교수 선정 및 지원

제13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 혹은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제14조(참여교수 평가 기준) 참여교수의 평가는 교육연구팀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 영역을 우선시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1. 논문은 SCI(E)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의 건수와 IF의 합으로 한다. 단, IF는 해당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주저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인정하고(단일 주저자 1, 2명의 주저자 0.7, 3명 이상 주저자 0.5), 공저자는 1/N만 인정한다. (N은 해당 논문의 총 저자 수를 말한다)
3. 교육연구팀 내 공저자 논문은 주저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세부사항은 [별표3] 참여교수 자체 선발 기준를 따라 결정한다.

제15조(참여교수 선정 기준) 참여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참여교수 수는 교육연구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2. 참여교수의 자격 요건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Cell, Science, Nature를 포함한 IF가 20 이상인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16조(참여교수 교체 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팀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2. 1년을 초과하는 국외 기관 파견 또는 연구년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건강상의 중대한 이상 및 사망 등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기준)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 전체 참여교수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책정된 국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실적 인정 기준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으로 한다.

3.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른다.
4. 성과급 기준표의 연구활동은 교육연구팀장이 연구과제 참여도와 지식수준, 문제해결력 등을 4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연구기여도의 경우는 본교 URP시스템의 연구실적 환산규정에 따라 반영하되, 만점을 60점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1점~300점은 30점, 301점~600점은 40점, 601점~900점은 50점, 900점 이상은 60점으로 한다.
5.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 연구활동 평가점수와 연구기여도 평가점수의 총합이 높은 순서대로 등급을 주어 지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100%에 맞춰야 한다.

등급	S	A	B	C
지급 비율(100%)	28%	26%	24%	22%

제 5장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및 활용

제18조(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팀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고,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인건비는 월 3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퇴직금 및 4대보험(개인)법정부담금을 포함하고, 4대보험(기관)법정부담금은 당해 산출에 따라 본교로 납부한다.
 3.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및 8차년도는 최소 6개월 이상 계약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본 교육연구팀의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과 협력하여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신진연구인력의 업무성과를 점검하여 연례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별표5]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연 1회 지급 할 수 있다.
- ④ 신진연구인력 중 본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총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본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본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⑤ 경조사 휴가, 병가, 공가, 공로 및 포상 휴가는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 6장 학술활동 지원 및 기준

제19조(국제학술회의 발표 지원 기준) 교육연구팀장이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인력에 대한 논문 발표 및 참가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국제학술회의 기준 충족 기준
 -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및 작성
3. 지원 대상
 - * 참여대학원생: 발표 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 * 신진연구인력
 - * 교수: 지도학생이 발표 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동행 가능
4. 단순 참가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 총 3인 이내로 가능하다.
5. 지원 경비는 교육연구팀의 사업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6.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영리 목적을 취하거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장기해외연수 지원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교육연구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에게 해외공동연구수행 및 교육과정 참여 등을 위해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해외연수 해당 월 장학금과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다.

1. TOEFL 550점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어학능력자
2. 연구 능력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3. 박사학위 논문 준비생
4. 해외연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별표6] 장기해외연수 선발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연구팀장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인원(그 수는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름)

제21조(해외학자 초빙) 교육연구팀은 교육연구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해외 소재 대학 및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2. 해당 연구 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초빙한다.
3.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팀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특강, 자문 등의 활동을 해야한다.
4. 초빙 경비의 지원은 국내 실 입국 기간만 가능하며, 초빙 수당 외 항공비, 체제비는 소속 대학의 (국내)여비 규정에 따른다.
5. 초빙 수당은 소속 대학 자체 규정 및 교육연구팀의 사업예산안에 따라 지급하

되, 외화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국내학술활동 및 논문심사·게재료 지원) ① 교육연구팀 구성원의 활발한 학술활동 진작을 위해 학술활동지원 예산에 따라 지원한다. 학술활동에는 국내 현지조사, 학술대회 참가 등이 포함된다.

② 국내 현지조사와 학술대회 참가 여비는 본교의 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하되, 교육연구팀의 자체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료를 지원한다.

④ 논문게재료는 1편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교육연구팀의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문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제23조(연구행사 지원) ① 헤리티지 포럼은 타 기관과의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포함한다.

② 헤리티지 콜로키움은 학과 전체 참여대학원생의 학술활동을 독려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발표회로 학기당 1회 이상 진행한다.

③ 랩 세미나는 각 랩의 지도교수와 참여대학원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의 발표회, 토론회 등을 말한다. 학기당 2회 이상 운영한다.

④ 위 연구행사는 교육연구팀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24조(전문가 초정 자문 및 취·창업 관련 특강) ① 교육연구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취업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강사료 지급은 본교의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교육연구팀에서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자문, 번역, 교정, 홍보 등의 부분을 교육연구팀의 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에는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한 교육연구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사항(배점)			실적 기간	배점	점수
외국어 능력	외국어 성적(택1)	영어	TOEIC	625 이상	최근 2년	5점	
		일본어	JPLT	510 이상			
			JPT	N2 120 이상			
		중국어	신HSK	4급 194 이상			
		기타	FLEX	520 이상			
대학원 성적	평점 평균	4.5		5점	직전 학기	5점	
		4.0이상		3점			
		3.5이상		1점			
논문게재	국제저명 학술지	제 1저자인 경우(20점)			최근 1년	20점	
		제 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10점)					
	국제일반 학술지	제 1저자인 경우(편당 15점)					
		제 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8점)					
	국내저명 학술지	제 1저자인 경우(편당 10점)					
		제 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5점)					
국내 등재후보지	제 1저자인 경우(편당 5점)						
	제 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3점)						
단행본 (저서)	국제, 국내, 번역	단독(10점)			최근 1년	10점	
		공동(편당 5점)					
학술대회	국제: Oral (10점), Poster(건당 5점)			직전 학기	10점		
	국내: Oral (건당 5점), Poster(건당 3점)						
사업팀 학술 활동 참여	헤리티지 콜로키움, 포럼 발표 (건당 5점)			최근 1년	15점		
	랩 연구회 발표(건당 3점)						
공모전 수상실적	공모전 참가(2점)			최근 1년	5점		
	공모전 수상(3점)						
학기별 연구계획서	학위논문 또는 학기별 제출 연구계획서			최근 1년	30점		
합 계					100점 / _____점		

[별표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사항(배점)		실적 기간	배점	점수
대학원 성적	평점 평균	4.5	5점	직 전 학기	5점	
		4.0이상	3점			
		3.5이상	1점			
논문게재	국제저명 학술지	제1저자인 경우(15점)		최근 1년	15점	
		제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10점)				
	국제일반 학술지	제1저자인 경우(편당 12점)				
		제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6점)				
	국내저명 학술지	제1저자인 경우(편당 9점)				
		제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5점)				
국내 등재후보지	제1저자인 경우(편당 6점)					
	제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3점)					
단행본 (저서)	국제, 국내, 번역 등			최근 1년	10점	
학술대회	국제: Oral (10점), Poster(건당 5점)			직 전 학기	10점	
	국내: Oral (건당 5점), Poster(건당 3점)					
사업팀 학술 활동 참여	헤리티지 콜로키움, 포럼 발표 (건당 5점)			최근 1년	10점	
	랩 연구회 발표(건당 3점)					
공모전 수상실적	공모전 참가(2점)			최근 1년	5점	
	공모전 수상(3점)					
연구 활동	연구과제 참여도			당 해 연구기간	5점	
	연구윤리의식수준				5점	
	업무지식수준				5점	
	문제해결력				5점	
학기별 연구계획서	학위논문 또는 학기별 제출 연구계획서			최근 1년	10점	
기여도	사업 수행 활동			직 전 학기	15점	
합 계				100점 / _____점		

[별표3] 참여교수 자체 선발 기준

평가항목		점수
연구역량	최근 1년간 연구비 수주액(입금일 기준)	20점
	최근 1년간 등록된 국내외 특허	20점
	최근 1년간 기술료(입금일 기준)	20점
	최근 3년간 참여교수 SCI(E)(SSCI포함)논문 환산보정 IF	20점
	최근 3년간 참여교수 SCI(E)(SSCI포함)논문 환산보정 ES	20점
합 계		100점

[별표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학과	성명			점수	배점 만점	실적 기간	평가 비율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점수	배점 만점	실적 기간	평가 비율	
연구 활동	연구과제 참여도				10점	당해 연구 기간 (최근 1년)	40%	
	연구윤리의식수준				10점			
	업무지식수준				10점			
	문제해결력				10점			
연구 ^[주1] 기여도	저서	국제 전문학술저서	300점(권당)	최대* 300점 * 점수 합 산 시 반영 가능한 최 대 한도	총점 (영남대 연구업적 총괄점수 기준)	환산* 점수	60점	60%
		국내 전문학술저서 A	150점(권당)					
		국내 전문학술저서 B	100점(권당)					
		전문 번역서	100점(권당)					
		번역서	80점(권당)					
	논문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A	600점(편당)	최대 4,000점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B	450점(편당)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300점(편당)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	200점(편당)	최대 1,000점				
		국내 저명학술지 논문 A	150점(편당)	최대 2,000점				
국내 저명학술지 논문 B		125점(편당)						
국내 저명학술지 논문	100점(편당)							
산학협동연구실적 (외부연구비수탁실적)		20만원 당 1점	최대 500점					
합 계	총 _____ 점 / 100점						100%	

*연구기여도 점수는 만점을 60점으로 한다. 따라서 1~300점은 30점, 301~600점은 40점, 601~900점은 50점, 900점 이상은 60점으로 한다.

[주1] 일반 연구업적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평가항목		일반 업적 점수		점수 한도(1년)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공학 의학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공학 의학	
저서	국제전문학술저서	300점	300점	300점	300점	
	국내전문학술저서A	150점	150점			
	국내전문학술저서B	100점	100점			
	전문번역서	100점	100점			
	번역서	80점	80점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논문A	600점	400점	4,000점	4,000점	
	국제저명학술지 논문B	450점	300점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300점	200점			
	국제일반 학술지 논문	SCOPUS 등재학술지 논문	200점	150점	1,000점	1,000점
	국내저명학술지 논문A	150점	100점	2,000점	300점	
	국내저명학술지 논문B	125점	100점			
	국내저명학술지 논문	100점	100점			
산학협동연구실적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20만원당 1점	40만원당 1점	500점	500점	

*연구업적 점수 확인: URP산학연구 - 연구관리 - 연구실적 관리 - 필수/일반 업적점수 출력

[별표5]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학과	사번	성명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점수	배점 만점	실적 기간	평가 비율
연구 활동	연구과제 참여도			10점	당해 연구 기간 (최근 1년)	40%
	연구윤리의식수준			10점		
	업무지식수준			10점		
	문제해결력			10점		
연구 기여도	연구 실무 수행			20점		60%
	연구실적 성과 관리 및 보고서 작성			20점		
	산업체 발굴 및 취업 연계			10점		
	저서·학술지·학술대회 발표 실적			10점		
합 계	총 _____ 점 / 100점					100%

[별표6] 장기해외연수 선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 비율
학업 성적	평점 평균 (직전학기)	<input type="checkbox"/> 50	<input type="checkbox"/> 30	<input type="checkbox"/> 10	50%
연구 능력	논문 학술대회 참여 등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5	25%
외국어 능력	공인어학성적 (최근 2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5	25%
합 계	총 _____ 점 / 100점				100%